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41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이병진·최기상·이훈기

이정문 • 남인순 • 박용갑

권향엽 · 문대림 · 강준현

김영호 • 이상식 • 이원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인체 유해성이 증대된다는 과학적 연구나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와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해물질의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건강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법률 제 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중 "유독성 물질"을 "유독성 물질, 미세플라스틱[크기가 5밀리미터(mm) 이하이며 물에 녹지 아니하는 고체플라스틱 입자 또는 조각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	12			
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				
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				
이 독소, 방사성물질, <u>유독성</u>	<u>유독</u>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성 물질, 미세플라스틱[크기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u>가 5밀리미터(mm) 이하이며</u>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	물에 녹지 아니하는 고체플라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스틱 입자 또는 조각을 말한			
	<u>다]</u>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